

#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KOLAS 사무국 안내사항

## -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이동 시」 신고 관련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2조(인정 분야 변경 등)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이동’이 발생된 경우, 신고 방법, 대상과 처리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인정신청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KOLAS 공인기관은 인정 범위 내에서 소재지,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이동’이 발생한 경우, KOLAS 사무국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그 밖의 변경」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KOLAS 사무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적격성을 확인 후 변경을 승인하고 인정서를 재발급합니다.
2.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밖의 변경」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KOLAS에서 인정받은 사항(인정서 갑/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장비의 단순 교체(인정 범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장비 추가, 소재지 내의 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장비 이동에 따른 신고 대상여부(예시) >

- ① 신규 소재지로 전체 또는 부분 이전 → 변경 신고(O)
  - ② 기존 소재지 간 일부 장비 이동 → 인정 범위 변경시, 변경 신고(O)
  - ③ 기존 소재지 내 일부 장비 교체, 추가, 이동 → 변경 신고(X)
- ※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은 소재지와 동일하게 적용

3. 신고의 대상이 아닌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이동」시에는 KOLAS 공인기관은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현장평가지 평가팀에서 그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끝.